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09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사유 추가 등	3

I. 개요

1.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620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2. 4.
- (3) 회 부 일 : 2024. 12.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업무 범위, 신청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과 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검사결과의 기록·보관·제출 등 의무사항과 출입·조사 등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침익적 행정처분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를 법률에 열거함으로써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7항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사유 추가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재 총리령 및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의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관·결과 제출 의무, 안전성조사기관에 대한 출입·점검·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상향하여 규정하고(안 제64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사유를 법률에 열거하여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5조).

현행	개정안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 ⑥ (생략) <u><신설></u>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성검사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조사와 시험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신설></u>	⑧ 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 업무 범위, 검사방법 및 검사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업무 범위, 제3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및 제6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5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검사기관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성검사기관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⑩ 안전성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출입·점검 및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⑪ 제9항에 따라 출입·점검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⑫ -----

-- 절차, 제6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절차 및 제9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출입·점검·조사 등-----.

제65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

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u>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u>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② (생략)	소 등) ①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64조제7항에 따른 기록의 작성·보관 및 결과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u> 5. <u>제64조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u> 6. <u>제64조제9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u> 7. <u>제64조제9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점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u> 8. <u>제64조제1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u> ② (현행과 같음)
---	---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64조¹⁾에서는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고,

총리령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²⁾에서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신청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지정의 세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시 고시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른 식약처 고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에서는 안전성검사기관에 검사결과의 기록·관리 및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성검사기관의 사무소·검사장소 등에 출입·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³⁾하고 있음.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업무 범위, 제3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및 제6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세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법 제64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또한, 현행법 제65조4)에서는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로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③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외에 ④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총리령⁵⁾에서는 검사 업무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검사기관 지정기준, 검사기간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하여 검사 업무 범위, 검사방법 및 검사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며,

식약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결과 기록의 작성·보관 및 결과제출 의무,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출입·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

3)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별첨2 참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5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3.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 위반)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란 별표 3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참고3] 참조

정지할 수 있도록 법률에 열거하여 명시하려는 것임

- 검사결과 기록·보관·제출 등 의무사항과 출입·조사 등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안 제64조)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침익적 행정처분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를 법률에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안 제65조)은 법률유보의 원칙상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주요 의무사항 및 지정취소 등의 법령상 근거 개정사항 >

구분	현행 근거	개정안
검사기록 작성 보관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13조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9조	개정안 제64조제7항
검사결과 제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16조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12조	
출입·조사 등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14조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10조	개정안 제64조제9항 부터 제11항까지
지정취소 (업무정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별표 3]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 등	개정안 제65조제1항제4호부 터제8호까지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 제64조제8항에서는 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 업무 범위, 검사방법 및 검사기간 등 총리령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개정안 제65조제1항제5호에서는 제64조제8항에 따른 준수사

항을 위반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64조제3항⁶⁾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성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업무 범위의 변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를 지정 취소 등의 사유에 추가하고, 개정안 제64조제8항의 준수사항에서 “검사 업무 범위”를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둘째, 개정안 제65조제1항제7호는 제64조제9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점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지정 취소 등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64조제10항에서 안전성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출입·점검 및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 제65조제1항제7호는 제64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보고·자료제출·출입·점검 및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로 조문을 수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성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업무 범위의 변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등) ① 법 제64조제3항 본문에서 “업무 범위의 변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명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업무 범위

3. 검사 분야 또는 유해물질 항목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시험·검사 관계 문서의 작성·보관·보고 등 의무사항과 출입·점검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고,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취소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다. 관계 부처 및 기관 등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검사기관의 의무사항과 행정처분의 사유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개정안에 동의함.
- 다만, 현재 정부안이 입법예고 중이므로 추후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51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인력, 시설, 설비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이하 “시험·검사성적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시험·검사 업무를 행한 경우
4.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검사 범위를 벗어나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5.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하거나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6의2.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험·검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경우
7.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방법·절차에 따라 시험·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재사항이 누락된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9.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10.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년 시험·검사 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12의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스템 장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검사에 관한 정보를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6조에 따라 시험·검사 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열람을 방해한 경우

제12조(시험·검사기관의 준수사항) ① 시험·검사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험·검사 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검사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 관계 문서(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험·검사기관은 품질관리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2조(보고와 출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외시험·검사기관 또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시험·검사기관이 수행한 시험·검사의 적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검사를 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험·검사기관의 사무소·검사장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시험·검사와 관련된 장부나 서류 등을 제출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13조(검사대장 등의 기록·관리) ① 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검사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검사기관지정 기준관련 서류 및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증거서류 및 검사성적서
3.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성검사 대장
4. 기타 검사기관 업무수행과 관련된 서류 등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관련된 서류는 최종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고, 제4호와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존한다.

③ 검사기관은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제1항제2호·제3호의 서류를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기관 사후관리)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65조제1항 및 규칙 제13조의 규정 위반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성검사기관의 사무소·검사장소 또는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안전성검사 관련 시설, 장비,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검사결과 제출) ① 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 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안전성검사 실적 보고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시스템(이하 "SafeQ"라 한다.)에 전산 입력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9조(검사대장 등의 기록·관리) ① 검사기관은 안전성조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검사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검사기관지정 기준관련 서류 및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안전성조사와 관련된 증거서류 및 시험분석성적서
3.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산물 안전성조사 대장
4. 기타 검사기관 업무수행과 관련된 서류 등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관련된 서류는 최종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고, 제4호와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존한다.

③ 검사기관은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제1항제2호·제3호의 서류를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기관 사후관리) ① 원장은 법 제65조제1항 및 규칙 제13조 규정 위반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성검사기관의 사무소·검사장소 또는 그 밖에 수산물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시설, 장비,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조사결과 제출) ① 검사기관은 안전성조사 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안전성조사 실적 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동일한 사항으로 최근 3년간 4회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마.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거나 검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단순 착오로 판단되는 경우 그 처분이 검사업무정지일 때에는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일 때에는 6개월의 검사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검사 관련 기록을 위조·변조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2) 검사하지 않고 검사성적서를	법 제65조 제1항제3호	지정 취소		

발급하는 행위 3) 의뢰받은 검사시료가 아닌 다른 검사시료의 검사 결과를 인용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4) 의뢰된 검사시료의 결과 판정을 실제 검사 결과와 다르게 판정하는 행위				
라. 검사 업무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 지정받은 검사 업무 범위를 벗어나 검사한 경우 2) 관련 규정에서 정한 분석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3) 공시험(본실험과의 대조를 위해 같은 조건에서 분석대상 성분을 제외한 실험) 및 검출된 성분에 확인실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 4) 유효기간이 지난 표준물질 등 적정하지 않은 표준물질을 사용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4호	검사업무 정지 1개월	검사업무 정지 3개월	검사업무 정지 6개월
마.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 1) 시설·장비·인력 기준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2) 검사능력(숙련도) 평가 결과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3) 시설·장비·인력 기준 중 둘 이상이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4호	검사업무 정지 3개월 검사업무 정지 3개월 검사업무 정지 6개월	검사업무 정지 6개월 검사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지정 취소 지정 취소
바. 검사 관련 기록 관리 1) 검사 결과 확인을 위한 검사 절차·방법, 판정 등의 기록을 하지 않았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 2) 시험·검사일, 검사자 등 단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4호	검사업무 정지 15일 시정명령	검사업무 정지 1개월 검사업무 정지 7일	검사업무 정지 3개월 검사업무 정지 15일
사. 검사기간 등 1) 검사기관 지정 등 신고 및 보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검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법 제65조 제1항제4호	시정명령	검사업무 정지 7일	검사업무 정지 15일

경우 3) 검사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경우				
아. 검사성적서 발급 등 1) 검사대상 성분의 표준물질분 석을 누락한 경우 2) 시료 보관기간을 위반한 경 우 3) 검사과정에서 시료가 바뀌어 검사성적서가 발급된 경우 4) 의뢰받은 검사항목을 누락하 거나 다른 검사항목을 적용하 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5) 경미한 실수로 검사시료의 결과 판정을 실제 검사 결과 와 다르게 판정하는 행위	법 제65조 제1항제4호	검사업무 정지 1개월	검사업무 정지 3개월	검사업무 정지 6개월